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이국희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I.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지원의 필요성

“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지원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홍보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형성과 유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핵심을 이룬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각 부문에 산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가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며, 여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화사회 의 기반구조를 형성한다.

데이터베이스가 산출하는 정보를 통해 개인, 기업, 공공조직은 업무처리능률을 높이고, 정보처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하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활

성화를 통해 가치있는 정보자원을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정보 활용이 증진됨으로써 국민편익이 증가하고 국가적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외형적 규모나 질적 수준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낙후된 실정에 있다. 국내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낙후성은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발전에 장애 요소로 남아 있으며, 세계경제시대에서의 산업경쟁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문제점은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다섯가지 경쟁력 요인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업체의 영세성과 비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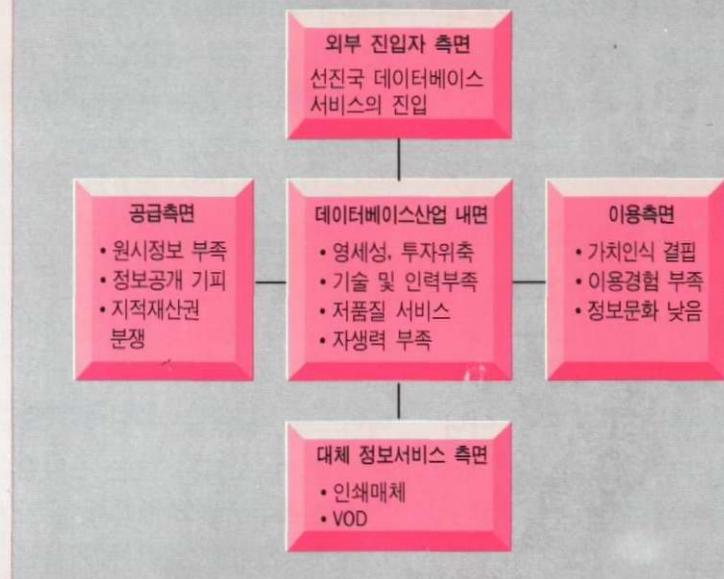
1994년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수는 397개 업체의 907개이다. 신문사와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는 종업원 10여 명의 소규모 업체로서 자본, 시설, 장비, 기술력이 뒤떨어진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정보검색대행 및 기타 서비스의 역할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를 비롯한 산업효율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2. 민간투자위축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원시자료 수집, 수집자료 가공, 가공자료 입력, 검색소프트웨어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금액이 초기에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용도가 낮아 채산성 확보가 어렵고, 투자회수기간이 타산업에 비해 매우 길며, 제작실패나 Out of Date 등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더욱기 데이터베이스제작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세제, 금융, 행정상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데이터베이스개발에 대한 투자가 자산(Assets)이 아니라 일반경비(Expense)로 처리되고 금융

〈그림1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문제점〉



담보도 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다.

3.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낙후와 전문인력의 부족

데이터베이스산업이 오랫동안 발전해 온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용데이터베이스를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이나 기본기술의 표준화도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교육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고급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저품질 서비스와 자생력 부족

무엇보다 데이터베이스서비스의 품질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느냐 또는 앞으로 정보요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에 관한 심층적 분석없이 원시자료를 단순 집적한 상태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5. 원시정보결핍 현상

우리나라 생활관습과 문화의 특성상 정보의 체계적인 축적이 다른나라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식적 정보보다 비공식적 정보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정

세미나 1

보분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보다 감각이나 사적인연에 의한 의사결정이 주를 이루는 풍토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6. 정보공개기피풍토

공공부문의 부처간이나 사기업간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이러한 풍토는 비단 데이터베이스산업에 필요한 원시정보 공급을 차단하는 장애요소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너도나도 개발하게 되는 중복투자의 원인이 된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나마 존재하는 원시정보도 그 공개가 철저히 기피되고 있다는 점이다.

7.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보호의 미흡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저작권)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을 인정받는다.(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창작성 요건을 갖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되겠는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개발에 대한 민

간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고 적어도 원시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을 막을 수 있고, 모호한 현행 법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8. 낮은 정보이용문화

우리나라 국민은 데이터베이스정보의 이용도가 낮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수단에 익숙치 않으며, 보이지 않는 무형재는 공짜라는 생각이 앞서고, 가능한 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이처럼 정보이용문화수준이 낮으므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데이터베이스 채산성이 낮으므로 데이터베이스 투자/품질관리/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수준낮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인해 정보이용문화가 다시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9. 선진국데이터베이스의 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성장단계를 초기, 도약, 활황, 성숙단계로 구분할 경우, 우리나라는 초기단계에서 도약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은 이제 그 활황단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의 33개 데이터뱅크 서비스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1621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되고 있다. 이들의 오랜경험, 전문성,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대량생산에 의한 효율성, 잘 다듬어진 경영기법, 고품질 정보는 이제 막 도약하려는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II.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지원 방안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과 낙후성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산업육성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데이터베이스산업도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투자와 지원으로 발전이 주도되다가 그 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거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에 의해 성장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은 그 특성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정보개발기술, 정보이용문화 등 전반적인 정보통신기술과 문화가 총체적으로 결집되어야 발전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분야나 한가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급속히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서히 발전되어 가는 산업이므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지원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이나 홍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1. 데이터베이스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1) 조문내용

- ① 정부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경쟁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관련기술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공통애로기술 또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2.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사업

(1) 조문내용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기술에의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이용, 관리 기술 및 방법상의 표준안을 정하고 이의

-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안을 사용해야 한다.
- ③ 표준화대상, 표준제정절차, 표준화추진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데이터베이스 품질기준의 정립

(1) 조문내용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의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중인 데이터베이스가 제 1항의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수정보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데이터베이스사업의 대가기준

(1) 조문내용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사업자가 적절한 대가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 유통, 정보검색, 통신망제공, 이용료회수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 이의 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민간사업자의 용역을 의뢰할 경우 제1항의 대가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인력양성

(1) 조문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베이스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① 데이터베이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②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③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설립, 지정 및 지원
- ④ 정보검색사 등 기술자격제도의 정립 및 전문인력 수급지원
- ⑤ 기타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미나 1

사업

6. 공제사업

(1) 조문내용

데이터베이스사업자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는 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① 데이터베이스사업수행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 ② 데이터베이스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
- ③ 기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데이터베이스산업단지 조성

(1) 조문내용

데이터베이스사업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관련기관·시설·기기·정보 등을 일정 지역내에 집중화시켜 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유통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부는 해당지역을 데이터베이스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8. 세제, 금융, 행정상의 우대조치

(1) 조문내용

- 1)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행정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사업자의 적립준비금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
- ② 데이터베이스현행화, 유지 보수 및 품질보증
- ③ 데이터베이스기술개발

9. 데이터베이스저작권 보호

(1) 조문내용

- 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정보의 체계적 구성을 가공 및 입력작업에 소요된 노력과 경비가 상당하고 그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편집 저작물(이하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이라 한다)로서 보호된다.

- ②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보호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저

작물의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작권법을 적용한다.
-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0.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1) 조문내용

일반 국민에게 유통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그 구성부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자에게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2조 제1호의 보상금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그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1. 데이터베이스심의조정위원회

(1) 조문내용

- ①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데이터베이스저작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임기로 한다.

12.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1) 조문내용

-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지원사업과 기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진흥원의 정관변경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등은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데이터베이스진흥기금의 설치

(1) 조문내용

- 1)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데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영케 한다.

- 2) 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① 데이터베이스기술의 연구개발
 - ② 표준개발, 제정 및 보급
 - ③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양성
 - ④ 공제사업 및 채무보증 추진
 - ⑤ 데이터베이스산업단지 조성
 - ⑥ 기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
 -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출연금
 -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④ 기금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 ⑤ 기타 수입금